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49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용우・천하람

김기표 · 김한규 · 용혜인

서미화 • 이수진 • 박상혁

오세희 • 남인순 • 문진석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하는 대상을 국가 기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음. 아동의 보호자 등 의 무 교육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5년,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0~12세 아동 202명 중 40%인 83명이 만 1세 미만의 영아였음.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%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짐. 피해 아동과학대 행위자가 동거한 경우 역시 91%로 아동들이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는 것으로 드러남.

이에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아동 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국가가 영유아 시기 가정방문을 통해 아 동양육환경 파악 및 육아 상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의 제목 중 "아동학대 예방교육"을 "아동학대예방교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교육"을 "교육(이하 이 조에서 "아동학대예방 교육"이라 한다)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아동의 보호자"를 "6세 이상 아동의보호자"로, "제1항에 따른 교육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교육"으로, "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"을 "아동학대예방교육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"을 "아동학대예방교육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"을 "아동학대예방교육을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"을 "아동학대예방교육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4장제1절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영유아 가정방문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

- ·군수·구청장은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1. 아동의 양육환경 파악
- 2. 아동 양육에 대한 상담
- 3.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양육 지도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2( <u>아동학대 예방교육</u> 의	제26조의2( <u>아동학대예방교육</u> 의
실시)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	실시) ①
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	
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	
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	
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	
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<u>교</u>	<u>_</u>
<u>육</u> 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	육(이하 이 조에서 "아동학대
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	예방교육"이라 한다)
출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・도지
	사,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임산
	부 및 그 배우자와 6세 미만
	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아동
	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
	<u>다.</u>
② <u>아동의 보호자</u> 등 <u>제1항에</u>	③ 6세 이상 아동의 보호자
<u>따른 교육</u> 대상이 아닌 사람은	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학
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	<u>대예방교육</u>
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	
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	아동학대예방교육을
<u>요한 교육을</u> 받을 수 있다.	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	④아동학대

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,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 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・시간 및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u>예방교육을</u>
⑤ 아동학대예방교육의

제36조의2(영유아 가정방문) ①
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2세 미
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방
문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
수행하는 가정방문 사업을 실
시하여야 한다.

- 1. 아동의 양육환경 파악
- 2. 아동 양육에 대한 상담
- 3. 육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양육 지도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 항의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 임할 수 있다.